

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● 제안사유

- 대통령령 제16,672호('99. 12. 31)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● 주요골자

- 제2조 제②항 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● 기타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16,672호, '99. 12. 31)

● 검토의견

대통령령 제16,67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항은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~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~12월중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, 제②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,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토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,

시행령 제16조 제①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정기회기 내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,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,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